

# 本會記事

## 理事會

第15回 理事會 1967.2.23. 17.00~20.30時 協會會議室에서 理事 全員 參席裡에 開催되었다.

報告事項으로서 第14回 理事會 會議錄 報告, 會費納付狀況 및 1月末 現在 決算 報告, 釜山, 慶北, 慶南支部 監查報告.

### 決議事項

1. 資材展示會日程決定(展示會期間 4月15日~5月15日) 後接機關 建設部 等 11個處 選定, 諮問委員 等 其他 必要事項決定. 會誌 題號 "建築界"로 公報部에 登錄申請키로함.

第16回 理事會 1967.3.23. 16.00 協會會議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됨.

1) 資材展示會의 會計는 獨立會計로 하며 審査委員을 構成함. 施賞範圍를 決定.

2) 釜山支部長 提議案件인 業務實績會費의 徵收基準統一은 支部長 會議에 提議키로함.

3) 二重職 名義賞與 整備方案 및 事務所 規制 方案은 油印하여 支部長會議 案件으로 다룸것.

4) 公共建築物은 會員에 限하여 設計토록 하고 協會에 圖書登錄할것을 要함로 하는 公문을 各道知事에게 發送할것.

5) 企劃委員會規定(75페이지 참조) 및 委員決定 李鍾泰(委員長) 姜大雄, 李明煥, 金源安, 李圭福, 申鉉壽, 李春相, 李奉魯, 宋寬植, 吳 杭, 裴基滢, 金東珪, 李喜泰, 柳光澤, 沈宣權, 李根庠, 崔昌奎.

6) 建設行政研究委員會 委員決定 朴永晚(委員長) 李鍾泰, 朴守鉉, 許畢鼎, 崔 銑, 李明煥, 金報根, 宣炳澤, 李文輔, 朴奎化.

第18回 理事會 1967.4.20. 16.00 協會會議室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됨.

### 討議 및 決定事項.

1) 支部長會議案件으로 理事會規程, 監查規程, 服務規程, 文書取扱規程, 企劃委員會規程 審議, 事務所 規制方案, 業務實績會費 徵收基準 統一案을 決定.

2) 建築士 資格試驗 應試에 따르는 經歷確認에 있어서 本部確認 部分은 서울 支部 經由.

3) 交易센터 要請인 建築專門家 懇談會에 派遣할 會員 2名추천은 會長에게 一任함.

4) 本會, 學會, 家協會 合同으로 開催할 建築技術 講習會는 本協會에서 掌摺, 獨立採算으로 하되 實施方案은 會長에게 一任.

5) 慶北支部 會員中 居住 不明者에 對한 措置는 定款 및 其他 法規에 依하여 處理할것.

第19回 理事會 1967.5.17. 17.00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 決定事項

1) 建築法 改正 公布에 따르는 施行令 改正에 關한 件은 各 理事가 分擔하여 成案하여 提出키로함.

2) 事務所 規制에 關한 件은 支部長連席會議時 通過된 建築士 事務所 規制 方案을 建設部에 建議하여 全國的으로 實施토록함.

3) 5月分 施行豫算決定.

4) 建築技術講習會를 5月10일부터 23日까지 개최키로함.

5) 諸規定 通過의 件은 前番 支部長連席會議에서 理事會에 委任한 諸規定에 대하여 各支部에서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通過됨.

第20回 理事會 1967.5.4. 20.00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 議決事項

서울地區 應試者의 經歷은 事實 여부를 서울支部에서 調査케하여 確認한 후 會長 名義로 確認함.

第21回 理事會 1967.5.13. 12.00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多數 參席裡에 開催함.

### 議決事項.

1) 資材施賞은 審査委員會 決定대로 함.

2) 作品施賞은 出品에 對하여 表彰키로함.

3) 會費徵收의 萬全을 期하기 爲하여 3個月 以上 會費 滯納會員 調査를 할것.

4) 慶北支部 會員 趙子庸 外 2名에 對한 徵收決議.

第22回 理事會 1967.5.17. 18.00 協會會議室에서 理事全員 參席裡에 開催함.

1) 課稅標準率 引下에 對한 建議書 作成.

2) 全北支部의 非行會員에 對한 조치강구토록함.

第23回 理事會 1967.5.20. 12.00 協會事務所에서 多數理事 參席裡에 開催함.

### 報告事項

1) 駐韓 이스라엘 大使로부터 이스라엘에서 67.6.20~6.27(8일간)까지 開催되는 世界 建築技術者, 建築士, 土木技術者 大會에 招請할 建築士 추천 의뢰의 경위 설명.

### 議決事項

1) 本協會 指導委員 朴春鳴氏를 추천키로함.

## 支部長會議

1967 會計年度

第5回 1967.4.23日(日) 10.00時 本協會 會議室에서 多數任員과 各市道 支部長(慶北支部長 不參) 參席裡에 開催되었다.

張起仁會長 開會辭에 이어 報告事項에서

1) 全南支部; 光州市廳에서 建築士 3名을 채용하여 建築法 第5條에 의하여 일반에게 무료로 設計하고 있어 支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報告.

2) 濟州支部; 無許可 建物を 막기 위하여 支部에서 職員을 채용하여 市廳에 근무하게끔 하여 無許可 團東이 잘됨을 報告.

### 決議事項

1. 總會에서 支部長會議에 委任한 各規定(75페이지 參照)을 通過됨. 但 異議있으면 1週日內에 書面으로 提出할것.

2. 二重職에 關해서 原案(建築士業務의 不誠實 및 免許貸與者 臨時措置方案 參照)대로 通過됨.

3. 正會員 會費中 業務實績에 關한 수시회비에 있어서 他支部 會員 會費의 徵收額은 3% 以內로 할것.

## 委員會

本協會 第17回 理事會(67.3.23)의 決議에 따라 建設行政研究委員會와 企劃委員會를 構成함.

建設行政委員會는 第1回 會議에서 名稱을 建築問題研究委員會로 改稱, 委員長 朴永晚, 委員 李鍾泰, 李明煥, 朴守鉉, 許畢鼎, 崔 銑, 金報根, 宣炳澤, 朴奎化, 李文輔氏 등으로 構成함.

企劃委員會는 委員長 李鍾泰, 委員 姜大雄, 李明煥, 金原安, 李圭福, 申鉉壽, 李春相, 李奉魯, 宋寬植, 吳杭 裴基滢, 金東珪, 李喜泰, 柳光澤, 沈宜權 李根庠氏 등으로 構成함.

第1回 建築問題研究委員會 67.4.8. 14.00~17.00 湖水크릴에서 委員長 朴永晚, 委員 李鍾泰, 許畢鼎, 朴守鉉, 李明煥, 金報根, 朴奎化, 李文輔, 宣炳澤, 崔 銑氏등 10名 參席裡에 開催됨.

本委員會 名稱을 建築問題研究委員會로 고치고 建築關係法 及 技術問題 만을 다루도록함.

建築關係法에 對한 全般的인 討議 及 委員會 運營方法을 論議함.

第1回 企劃委員會 67.5.20. 14.00~17.00 協會 會議室에서 多數委員 參席裡에 開催.

企劃委員會 規定에 對한 討論에 이어 法改正에 關한件에 있어서 專門委員으로 李明煥, 宋寬植, 金原安 3名으로 選定.

1) 法改正에 對해서; 草案執筆을 委員 裁량하에 기간을 정하여 作成 提出토록하며 協會에서는 作成된 改正案을 建築問題研究委員會에서 檢討키로 함.

2) 會費徵收에 關해서; 每月 未納會費를 該當 支部에 通知하고 未納支部長이 未納理由書를 提出하도록 함 支部長은 定款規定에 依한 處罰規定을 未納會員에게 警告狀을 發送토록함.

3) 會員추천에 關해서; 設計用役에 對한 外部로부터의 추천의외에 對하여는 추천하지 않는 方向으로 하기로함.

4) 倫理委員會에 關해서; 倫理委員會를 改編하되 構成은 會員으로서 서울 6名 釜山 1名으로 함.

# 大韓建築士協會

## 企劃委員會規程

1967年 4月 23日 制定

**第1條(目的)** 本規程은 大韓建築士協會의 企劃委員會(以下 企劃委員會라 稱한다)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組織)** 企劃委員會委員은 17人으로 하고 協會 및 支部任員과 會員中에서 理事會가 選任 하되 任期는 一年(事業年度)으로 한다.

**第3條(機能)** 企劃委員會는 協會의 運營과 發展을 促進하고 會務를 圓滑하게 遂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諮問에 應하며 必要한 事項은 建議 할 수 있다.

1. 事業計劃의 樹立 및 實施
2. 豫算編成指針樹立 및 審議
3. 協會運營 發展에 對한 研究 및 計劃
4. 其他 協會運營上 理事會에서 必要한 事項

**第4條(理事會 및 各會議出席)**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企劃委員會에서 選定한 委員을 理事會 및 各會議에 出席시켜 意見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

**第5條(會議)** ① 企劃委員會는 隔月로 定期會議을 開催하고 必要에 따라 隨時開催한다.

② 企劃委員會는 協會 總務擔當理事가 이를 召集하여 그 委員長이 된다.

③ 總務擔當理事 有故時는 미리 指名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委員 三分之一 以上이 會議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要求가 있을 때는 委員長 및 그 指名을 받은 委員이 이를 召集한다.

⑤ 企劃委員會는 委員長 및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며 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委員長은 表決權을 갖으며 贊反同數 일때는 決定權을 갖인다.

**第6條(機能의 委任)** ① 企劃委員會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 할때에는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機能의 一部를 分料委員會에 委員할 수 있다.

② 委料委員會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機能을 委託 받았을 때에는 委任된 事項에 關하여 諮

問에 應하여야 한다.

**第7條(會議錄의 作成)** ① 企劃委員會의 審議 內容에 關하여는 會議錄을 作成한다.

② 前項의 會議錄에는 委員長 및 參席한 委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附則** 本規程은 1967년 5월 1일부터 施行한다.

## 建築士業務의 不誠實 및 免許貸與者 臨時措處方案

1967年 4月 23日 制定

**第1條(二重職者)** 建築士法 第23條 및 同法 施行 第21條에 依하여 事務所로 開設한 者中에서 다음에 該當한 者는 建築士法 第19條, 第20條, 1,2項에 規定한 業務를 誠實히 遂行할 수 없는 者로서 建築士法 第28條, 第1項7號에 該當한 者로 認定하고 同條 第1項8號에 依한 處分을 한다.

1. 公務員
2. 教育公務員 및 準教育公務員
3. 國營企業體에 在職者
4. 其他 法人 또는 個人企業體에서 俸給을 받고 從事한 者

**第2條(免許貸與者)** 建築士事務所 開設者로서 다음에 該當行爲를 行使하였을 時는 建築士法 第10條에 依한 免許貸與者로 認定하고 同法 第39條3號에 依하여 處罰토록 한다.

1. 前條 二重職 該當者가 業務를 行한 圖書를 取扱한 者
2. 建築士法 第4條, 第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業務를 行한 者의 圖書를 取扱한 者
3. 建築士法 第25條의 規定을 違反하고 業務를 行한 者의 圖書를 取扱한 者, 但 어느 一定한 企業體에 在職中인 建築士가 企業體 需要의 設計를 한것을 會員이 此에 對한 節次 履行代理를 하였을 境遇에는 此는 免許貸與者가 아니다.

**第3條(無免許業者 團束)** 建築士法 第5條1項에 依한 設計를 會員이 아닌 者가 보수를 받고 設計行爲를 한 者는 이를 無免許業者로 간주하고 依法 處理한다.